

청주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176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나1761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가단2769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룡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9. 17.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가단276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피고는 M(N 생, 주소: 인천 남동구 O, P호)과 Q(R 생, 주소: 인천 남동구 O, P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 12. 6. 접수 제12787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12.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C의 사망에 따라서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12.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 제1심 판결 제6~7쪽의 ‘그 밖에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를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명백한 고유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에 피고의 고유재산이 사용되었다고 가정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매수자금을 D으로부터 대출 받았는데 C만 채무자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대출 부담 없이 온전히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자신의 지분으로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남편인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로 변경하고, ► C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반영하여, ①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고, ② 제1심판결 제9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피고는 C에게'를 '피고는 C의 상속인들인 M과 Q에게'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인 점(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제1심판결 변경 사항

라. C의 사망과 그에 따른 상속

C는 2018. 12. 10. 사망하였고, C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S은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C의 직계존속인 M과 Q가 C의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제1, 5, 15, 18,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당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김환권, 판사 전보람

별지